

NEWSLETTER

December 2021

공정거래 그룹 / 준법감시팀
Antitrust & Competition Group
/ Compliance Team

CONTACT



변호사 이경훈

T: 02.772.4419
E: kyunghoon.lee@leeko.com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최승호

T: 02.772.4729
E: seungho.choi@leeko.com

담합 발생 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과 그 시사점

최근 대법원은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담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담합 관련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국내 판결의 동향, 관련 일본 사례의 동향, 그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국내 판결의 동향

1. A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판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A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사의 소액주주들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였던 X를 포함한 경영진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는 X가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X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며,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사의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2. B건설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판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B사의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담합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감독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위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및 벌금 합계액을 관련 손해액으로 보고, (i) 사내이사가 사외이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ii) 이사의 급여 합계액, (iii)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회사가 얻은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II. 일본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일본에서는 이사가 담합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사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보다 앞서 자진신고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사례(2010. 12. 및 2012. 10. 제기된 스미토모 전기공업의 2건의 주주대표소송)가 있었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사가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면 감시·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최근 판결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사례들은 자진신고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 국내에서도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로 인한 결과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및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담합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보건이나 제3자 책임 등 각종 규제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나 윤리규범 등 사내규정, 그리고 사외이사·감사선임 등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법무성에서 제공한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에서 제시된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Compliance Program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Compliance Program의 설계: 경쟁사 접촉 시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등 정책과 절차, 익명 내부고발제도, CEO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천명과 지속적인 교육, 고위험 영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 Compliance Program의 구축: 충분한 직위(sufficient seniority)와 경험을 갖춘 인력, 경영진의 인적·물적 지원, 독립적인 권한,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 통로 등이 확보된 준법 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 Compliance Program의 실행: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정기적 검토 및 지속적 개선, 내부조사의 수행,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발간,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의 적극 활용:** 담합이 인지된 시점부터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아무리 모범적인 Compliance Program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업종, 지역, 업력이나 업무수행방식, 구성원의 인식 등에 따라 준법 위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사가 당면한 위험요소와 위험도를 식별, 평가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Compliance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Compliance Risk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